

전주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나168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나16888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소1229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트원

담당변호사 박정교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종

변론 종결 2024. 10. 2.

판결 선고 2024. 11. 27.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소12295 판결

주문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349,6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1924년 생)의 아들이고, 피고와 D은 C의 딸이다.

나. 원고는 2015. 4. 9. 원고의 처인 E를 통하여 망 C 명의 계좌에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을 송금하였다.

다. D은 2015. 4. 17.경 이 사건 송금액을 출금하여, F조합(이하 'F조합')에 C 명의로 6개월 정기예탁하였고, 2015. 10. 21.경 위 정기예탁을 1년 연장하였다.

라. 피고와 D은 2016. 5. 13. 위 정기예탁을 중도해지하여 50,649,602원을 인출한 후 이 중 25,349,602원은 피고 계좌에, 나머지 25,300,000원은 D 계좌에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어머니인 C를 위하여 쓸 목적으로 C 명의 계좌로 보관, 관리하고 있던 원고 소유의 돈이다. 피고는 2016. 5. 13. 이 사건 송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 중 25,349,602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인 25,349,602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증여하면서 D에게 위 돈의 관리를 부탁한 것으로,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 소유가 아니다.

3.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원인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송금액의 소유권 및 처분권이 자신에게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을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송금액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C에게 있다고 다투며,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송금액을 C에게 송금한 당시에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하였고 그 뒤에도 이를 관리한 것은 원고로서 피고의 이 사건 송금액 인출 당시 이 사건 송금액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고, C에게는 소유권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가 2015. 4. 9. C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3, 4, 7, 8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① 2015. 4. 9.부터 2016. 5. 13.까지 이 사건 송금액에 관하여 원고가 C나 원고를 대신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D에 대하여 C를 위한 구체적 지출을 지시하거나 구체적인 처분 방법을 지시한 바는 없는 사실, ② 원고는 피고와 D이 이 사건 송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정기예탁금에서 모두 인출하기 전까지 한 번도 C 명의의 계좌를 확인하거나 그 계좌 관리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일이 없었던 사실(D의 증언에 의하면 인출 이전 정기예탁이나 갹신에 관한 구체적 지시나 관련 논의는 C가 하거나 C와 상의 후 이루어졌다), ③ C는 1924년 생이지만 2016.경이나 그 때로부터 한 참이 지난 2022.경에도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거나 의사표현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을 가지고 원고가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송금액을 C 명의의 예금계좌에 보관하여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액이 원고 소유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송금액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설민수

판사고연금

판사송인우